27. 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구불결장접합부 악성신생물

성별	남성	나이	만 54세	직종	타이어성형	직업관련성	높음

1 - 개 요

근로자는 1993년 5월 ○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9년간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다. 근로자는 2022년 1월 6일에 □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 시 분혈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2022년 1월 13일에 □병원에서 대장내시경과 조직병리검사를 받았고, 2022년 2월 24일 만 54세의 나이에 △대학병원에서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(C19)을 진단받았다. 근로 자는 성형업무 중 별다른 보호구 착용 없이 솔벤트, 고무휴, 카본블랙 등에 노출되어 상기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는 1993년 5월 ○사업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생시점까지 약 28년 10개월간 타이어 (PCR, TBR) 성형공정에서 성형사로 근무하였다.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, 1993년 5월에 입사하 여 수동성형기를 2인 1조로 운전하다가 1999년 말경 반자동 성형기가 도입되면서 1인 작업으 로 변경되었으며, 입사 시 설비가 도입되는 시기여서 여러 호기의 PCR 수동성형기를 옮겨 다 니며 운전하였다고 한다. 수정작업과 폐기작업 시 500ml 용량의 솔벤트를 사용하여 재료 및 고 무를 접착·제거하는데, 솔벤트는 저장탱크에서 소분해서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500 ₪ 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형태였다. 수정작업은 성형작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하루에 사용하는 솔벤트 양이 적게는 150째, 많을 때는 250 째 정도로 매일 사용하였고, 불량품 폐기작업은 작업호기 옆 공간 에서 보통 3~4시간의 잔업시간 동안 수행하였다. 폐기작업 시 트레드 1개당 500㎖ 솔벤트 1통을 사용하였고, 시간당 3통이 사용될 정도가 사용량이 많았으며 이때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목장 갑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 2012~2013년쯤 별도의 폐기장이 생겼지만 부 스 공간이 협소하여 대부분 부스 밖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폐기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. 한 편 근로자는 과거 건물 지붕이 석면이 포함된 양철 슬레이트 지붕이었고, 지붕에서 물이 새면서 빗물 공사를 자주 하였는데 지붕에서 가루가 많이 떨어져 현장에 날렸으며, 공장 레이아웃 변경이 나 설비 변경 시 건축물을 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. 건물 슬레이트 지붕은 1999~2003년 기간 동안 보강되어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. 근로자 근무형태는 1일 8시간, 4조3교대(오전 6 시~14시, 14시~22시, 22시~익일 6시)로 이루어졌다.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, 입사 후 1999년까 지는 3조3교대로 근무하였고, 2000년부터 4조3교대로 바뀌었는데, 3조3교대 시절에는 월 1회 휴무도 쉽지 않을 정도였고, 4조3교대가 되면서 월 4~5일(7~8일)의 휴무를 가졌다고 한다.

3 →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4 - 유해인자

- 화학적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22년 1월 6일 □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 시 분혈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2022년 1월 13일에 □병원에서 대장내시경과 조직병리검사를 받았고, 2022년 2월 24일에 △대학병원에서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(C19)을 진단받았다. 2022년 2월 25일부터 △대학병원에서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았고, 2022년 8월 6일에 저위전방절제술(Low Anterior Resection, LAR)을 받은 후 현재 추적관찰 중이다. 의무기록 및 2012~2022년 건강검진 결과, 2012년 3월~2022년 3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, 근로자의 진술을 확인한결과, 근로자는 2004년에 당뇨병을 진단받고, 치료 중이며, 직장암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다. 흡연은 총 20년 간, 하루 반갑을 하였고, 음주는 주 2~3회, 소주 1~2병/회, 1~2회/월한다고 하였다.

6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22년 2월 24일 만 54세의 나이에 △대학병원에서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(C19)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1993년 5월 ○사업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생시점(2022 년 2월)까지 28년 10개월간 타이어(PCR, TBR) 성형공정에서 성형사로 근무하였다. 국제암 연구소에서 직장암과 연관된 직업적 유해인자 중에 제한적인 근거를 가진 인자는 야간교대근 무, 석면, X선 및 감마선이 있다고 하였다. 근로자는 성형사로 근무하면서 28년 10개월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, 입사 후 1999년까지는 3조3교대로 근무하였고, 2000년부터 4조3교대로 바뀌었는데, 3조3교대 시절에는 월 1회 휴무도 쉽지 않을 정도였고, 4조3교대가 되면서 월 4~5일(7~8일)의 휴무를 가졌다고 한다. 그 외 복합유기용제에 지속 노출되었고, 석면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있었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인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 끝.